

#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및 실비 한도액표

## 1. 근거

- 가.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
- 나.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

## 2.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

- ◆ 부동산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되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

가. 주택(부속토지 포함)의 중개보수(도 조례 제2조) ('15. 6. 3 시행)

구분	거래금액	상한요율	한도액
매매·교환	5천만원 미만	1천분의 6	250천원
	5천만원 이상 ~ 2억원 미만	1천분의 5	800천원
	2억원 이상 ~ 6억원 미만	1천분의 4	-
	6억원 이상 ~ 9억원 미만	1천분의 5	-
	9억원 이상	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	
임대차 등	5천만원 미만	1천분의 5	200천원
	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	1천분의 4	300천원
	1억원 이상 ~ 3억원 미만	1천분의 3	-
	3억원 이상 ~ 6억원 미만	1천분의 4	-
	6억원 이상	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 협의	

- 중개보수 : 거래금액 × 상한요율 범위에서 계약한 요율(단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함)
- 거래금액의 계산 및 적용은 「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」 제20조제5항에 따른다.

나. 토지·상가 등 주택이외의 중개보수(시행규칙 제20조)

- 본 중개업소에서 받고자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

대상	상한요율	비고
오피스텔 (전용면적 85㎡ 이하, 전용 입식부엌, 화장실, 목욕시설 등 모두 갖춘 경우)	매매·교환	1천분의 ( ) 법정 상한요율 : 1천분의 5
	임대차 등	1천분의 ( ) 법정 상한요율 : 1천분의 4
그 외 오피스텔, 토지·상가 등	1천의 ( )	법정 상한요율 : 1천분의 9

- 중개업소에서 받고자하는 중개보수 상한요율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

## 3. 실비한도(도 조례 제3조)

구분	청구범위	비고
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소요 실비	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	건당 1천원
	증명 발급 및 열람	당해 증명 발급·열람 수수료
	여비(교통비, 숙박비)	실비
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소요 실비	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	예치기관 수수료
	반환 또는 지급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	실비
	사무처리 비용	해당 수수료
	여비(교통비, 숙박비)	실비